

## 2-3-1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원 학칙(이하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3조(수업)** 대학원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업의 운영은 필요 시 야간에 할 수 있다.

### 제 2 장 입 학

**제4조(입학지원서류)** 학칙 제7조에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입학지원서
2.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3. 출신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
4. 연구계획서
5.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

**제5조(입학전형)** ①대학원 입학전형은 3인 이상의 교수가 시행한다.

② 입학지원 서류심사, 구술시험 및 면접 등의 성적배분비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③ 제2항의 구술시험 이외에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입학허가)**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.

### 제 3 장 등록, 휴학, 복학, 퇴학, 제적, 유급, 편입학 및 재입학

**제7조(등록의 종류)**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규등록 : 수업년간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
2. 입학등록.편입학등록.재입학등록 :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
3. 연구등록 :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학생

**제8조(휴학)**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창업휴학

의 경우 총장은 창업의 업종 및 타당성 등을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.

1. 병역휴학 : 군입영통지서(소집통지서)
2. 질병휴학 :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
3.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: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4. 창업휴학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(법인사업자에 한함)
5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

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군입대로 인한 휴학 : 군 입영일(소집일) 1일전까지
2. 군입대를 제외한 휴학 : 등록 후 휴학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,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
3. 질병,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: 학기말 시험 시작 일주일 이전

③ 군휴학자가 입영(소집)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입대가 취소(귀향)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하거나, 복학하여야 한다.

④ 휴학 신청자가 휴학사유의 상실로 인하여 휴학신청 후 2주 이내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. 단, 학기개시 후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연기간은 결석처리 한다.

**제9조(복학)**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등록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10조(퇴학)**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11조(제적)** 학칙 제17조 제3호에서 “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”라 함은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.5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.

**제12조(편입학)** ① 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20조가 정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소요학점의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 편입학한 학생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요학점(논문세미나 학점을 제외한 다)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재입학)**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학기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.

**제14조(재학년한 등)** ①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된다.

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,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한다.

## 제 4 장 교과과정 및 수강신청 등

**제15조(교과과정)** 대학원 학생이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은 <별표 1>과 같다.

**제16조(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)** ①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② 대학원장은 매 2년마다 교과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.

③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.

**제17조(논문세미나 또는 연구세미나의 수강)** ① 논문세미나 I 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학점 및 성적을 부여하고 논문세미나 II 또는 연구세미나는 [별표 1]에 따라 입학연도로 구분하여 이수한다.

**제18조(논문·연구보고서 지도 학생수의 제한)**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는 논문·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동일학기에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19조(수강 신청 및 변경)**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.

**제20조(교과목 담당교수)** 교과목의 강의, 실습을 담당하는 “교과목 담당교수”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교내 전임교원
2.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

**제21조(담당교과목수의 제한)** 교과목 담당교수는 한 학기에 2과목(논문세미나 II와 연구세미나는 제외한다)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제 5 장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

### 제 1 절 입학 전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

**제22조(학점이전)** ①입학 전에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학점이전은 대학원의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 이상인 것에 한한다.

③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수업년한)**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이전이 인정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학칙

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2 절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

**제24조(학사학위과정 학점의 이전)** ①학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이전은 그 성적이 B 이상인 것에 한하여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학점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제1학기 말 이전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수업년한)**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의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6 장 논문지도

**제26조(논문지도교수)** 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.

②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27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**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본교 간호학 전공 교원으로 한다.

## 제 7 장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시험

### 제 1 절 영어 및 종합시험

**제28조(영어시험)** ① 학칙 제28조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영어교과목을 이수(P/F)하거나 [별표2]에 해당하는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종합시험)** ① 학위청구 논문제출자와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종합시험은 3과목을 응시하여,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② 대학원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,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 합격은 무효로 한다.

③ 제2항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원칙으로 하되,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종합시험의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제 2 절 응시신청 및 출제

**제30조(응시신청)**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응

시료와 함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31조(출제)**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.

## 제 8 장 학위청구

### 제 1 절 논문의 체제와 제출절차

**제32조(논문의 체제)** ①학위청구논문의 표제지 등 체제는 “예수대학교 대학원학위청구논문 체제”에 따르되, 본문과 참고문헌은 전공학문분야별 전문학술지의 편집체제에 따른다.

②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영어로 쓴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발표)**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를 심사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학과에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한다.

1. 학위논문작성계획서 1부.
2.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1부.
3.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(1년 이내)1부.

**제34조(학위논문 심사신청)** ①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석사 학위논문을 학사일정에 의거해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
2. 심사용 논문 3부
3. 심사료

**제35조(논문의 공개발표)**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자는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학위논문 유사도 점검)**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표절(유사도) 검사를 실시하고, 이를 지도교수가 점검하며 점검 확인서를 논문 심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37조(논문제출년한)** 논문제출년한은 대학원 학칙 제29조에 따르며, 제14조를 준용한다.

### 제 2 절 논문의 심사

**제38조(논문심사위원)** ①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0조를 준용한다.

②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.

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

**제39조(논문의 심사)** ①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

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합하여 1회 이상으로 하되,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구술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.

**제40조(심사결과 보고)** 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41조(심사위원회의 회의정족수)**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.

**제42조(논문의 합격판정)** ① 대학원 학위논문은 “합격(P)” 또는 “불합격(F)”으로 사정한다.

② 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.

**제43조(합격된 논문의 제출)** ①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학위논문 3부를 대학원에 제출하고, 학위논문 최종 원본파일과 학위논문원본파일 제출확인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 3 절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절차

**제44조(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)** ①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대학원 학칙 제20조 제3항의 학점이수
2. 심사용 연구보고서 제출

③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자는 4학기 말 정해진 학사일정 내에 연구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병역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학기 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연장 승인된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수료 후 1년 이내로 하며,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학기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연구등록금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/4로 한다.

**제45조(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)** ①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위청구 논문대체 심사 신청서
2. 심사용 연구보고서 2부
3. 심사료

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“합격(P)”, 또는 “불합격(F)”으로 판정한다.

③ 주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9장 직제

**제46조(주임교수)** 대학원 학칙 제 38조의 2에 따라 주임교수를 둔다.

**제47조(주임교수 자격)** 주임교수는 본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.

**제48조(주임교수 직무)**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운영 및 제반 학사업무를 주관하며,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지도교수 배정 받기 전의 대학원 학생의 학습지도에 관한 일
2. 교과과정운영 및 교과목 설강에 관한 일
3. 지도교수 및 강사추천에 관한 일
4. 선수과목 결정 및 동일 이수과목 인정에 관한 일
5. 학점 및 자격시험에 관한 지도 및 추천에 관한 일
6. 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일
7. 기타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

**제49조(주임교수 위촉)**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50조(논문 지도교수)** ① 대학원 학생의 논문작성 및 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8조 원칙에 따라 지도교수를 둔다.

② 논문 부정행위 발생 시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51조(직무)**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담당 대학원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지도
2. 대학원 학생의 교과목에 관한 지도
3. 논문 연구계획서 작성·제출에 관한 지도
4. 대학원생 진로 및 기타 학사업무에 관한 지도

**제52조(논문 지도교수 위촉)** 주임교수는 대학원 학생의 전공분야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 교과과정 편성표

## 1. 논문제출자

구 분		교과이수구분				이수 학점	비고
		공통	전공필수	전공선택	전공 선수		
일반 대학원 <석사과정>	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	.	9 *논문세미나 II P	15	.	24	
	2018-2019 학년도 입학자	.	9	15 *논문세미나 II P	.	24	
	2020-2021 학년도 입학자	.	12	12 *논문세미나 II P	.	24	
	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	.	12	12 *논문세미나 II P **Advanced English P	.	24	

\* 논문제출자는 논문세미나 II 지정 과목임.

\*\* 학위청구 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 교과임

## 2. 논문대체자

구 분		교과이수구분				이수 학점	비고
		공통	전공필수	전공선택	전공선수		
일반 대학원 <석사과정>	2018-2019 학년도 입학자	.	9	21 *연구세미나 P	.	30	
	2020-2021 학년도 입학자	.	12	18 *연구세미나 P	.	30	
	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	.	12	18 *연구세미나 P **Advanced English P	.	30	

\* 논문대체자는 연구세미나 지정 과목임.

\*\* 학위청구 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 교과임

[별표2]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공인영어점수 기준

공인영어 점수 기준*				
TOEIC	TOEFL			TEPS
	PBT	CBT	iBT	
650점 이상	500점 이상	173점 이상	61점 이상	500점 이상

\* 학위청구 논문 등 심사신청일 전까지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